

의안번호	제 57 호
의결연월일	1999. 4. 9

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. 4. 2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4. 7

다. 상정일자 : 1999. 4. 8

제6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안등안전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기획감사실장 : 이경희)

가. 제정이유

-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(안 제2조)

-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)
- 예고문 작성과 예고방법에 대하여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, 처리에 대하여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원용)

-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행정청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론요지

- 생 략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